

예산총칙

제1조 :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813,435,664	24,403,070
1. 일반회계	805,644,222	24,169,327
2. 특별회계	7,791,442	233,743
의료급여기금	1,097,796	32,934
주차장	6,165,962	184,979
주거환경개선사업	63,658	1,91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34,104	10,023
지하수관리	129,922	3,898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187,51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일반조정교부금,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